

식품 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 질의 응답집

2008. 6.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 품 관 리 과

목 차

Q1. 지침의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1
Q2. 향후 입법추진시 식품업체의 의견 반영 계획1
Q3. 집단급식소, 식당 등도 보고대상에 포함되나요1
Q4. B2B도 보고대상에 포함되나요 ······2
Q5. 축산물가공처리법 생산제품도 보고대상인가요2
Q6. 생선가시를 이물로 규정한 이유 ······3
Q7. 금속성 이물 등 보고대상 이물의 구체적 분류3
Q8. 수입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보고기관4
Q9. 소비자 신고내용을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기간은4
Q10. 연간총매출액 산정방법은 ·····5
Q11. 소비자와 원만하게 해결된 신고도 보고하나요5
Q12. 식품업체가 행정기관에 보고후 조치사항은6
Q13. 보고대상 이외의 이물에 대한 식품업체의 조치 ······6
Q14. 이물의 보관 및 폐기 ······7
Q15. 보고를 하지 않은 식품업체에 대한 제재 ······7
Q16. 이물 발견에 대한 행정처분 ······8
Q17. 시정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기간은 ······8
Q18. 식품중 이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9
Q19.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신고도 행정기관에 통보하나요9

Q.1 지침의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식품 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마당 > 식약청자료실 > 간행물/ 지침]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향후 입법추진시 식품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 있나요?

- ▶ 『식품 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에 포함된 내용을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입법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 ♣ 특히,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침 제정을 위해서는 식품업체에서 동 지침을 성실히 운영하시어 미흡한 부분을 많이 발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소비자 이물발견 불만사항 보고대상 업체와 관련하여, 집단급식소, 식당 등도 보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 식품 이물관련 보고대상은 원칙적으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식품제조업체, 식품등수입업체 및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우선 보고대상이 됩니다.

- ♣ 특히, 백화점, 대형판매점 등의 경우 자사브랜드 제품(PB, PL)에서 이물 발견 소비자 불만사항이 신고되는 경우는 직접 식약청 또는 시·도에 보고하시기 바라며, 단순 판매한 제품에서 이물 발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면 제조업소에서 해당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 ▶ 아울러, 전국적인 체인점 형태의 음식점 등에서 이물이 발생하였고, 발생 원인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행정기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 Q.4 기업체와 개인소비자 거래(B2C)관련 이물 발견 불만사항은 보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와 기업체 거래(B2B)도 보고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 ▶ 동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B2C(기업체와 개인소비자 거래) 뿐만아니라 B2B(기업체와 기업체 거래)도 보고대상에 포함됩니다.

Q.5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생산한 제품도 보고대상에 포함되나요?

▶ 동 지침의 적용범위는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식품(가공식품) 및 건강 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생산 제품은 보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6 생선가시를 이물로 규정한 이유는?

- ▲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이물의 정의와 동 지침에서 말하는 이물은 차이가 있으며, 동 지침에서 분류한 이물은 소비자 입장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판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제조자가 정상적으로 의도한 방법에 적합하게 생산된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생선가시)은 보고대상에는 해당되나 식품공전 이물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즉 정상적인 제조과정에서 발견된 생선가시는 행정처분을 위한 이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7 금속성 이물, 벌레, 생선가시 등 보고 대상 이물의 구체적인 범위가 마련되어 있나요?

- ▶ 금속성 이물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스테플 심, 클립, 볼트, 너트, 베어링, 2.0 ㎜ 이상 크기의 철수세미 등 금속성 이물을 말합니다.
- ♪ 생선가시 등의 경우 원료에서 기인한 것으로 세척 등의 전처리를 하였으나 현재 기술적 한계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곰팡이가 발생하여 보고대상이 되는 식품은 살균 또는 멸균하여 밀봉· 포장한 빵류, 음료, 레토르트식품 등의 제품을 의미하며, 메주, 살균 하지 않은 장류 등에서 발생한 곰팡이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8 수입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어느 행정기관에 보고하나요?

- ▶ 동 지침에서 정한 보고체계는 식약청 또는 시·도이며, 이는 영업신고 관련 인·허가 기관과 관련이 없습니다.
- ▶ 회수1등급 등 위해우려가 있는 이물, 전국적인 회수조치가 필요한 대량 생산·유통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등의 악의적인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은 영업 신고 기관과 관계없이 식약청에 보고합니다.
- ▶ 따라서 식약청 보고대상 이외의 이물의 경우 시·도에 보고하므로 수입식품도 이물의 종류 등에 따라서 시·도에 보고가 되며 또한 시·도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Q.9 소비자로부터 이물발견 신고를 접수 받으면 행정기관에 보고는 며칠이내에 하나요?

- ▲ 소비자로부터 이물발견 불만사항을 접수한 식품업체는 신고한 이물의 종류가 보고대상에 해당되면 즉시 소비자 불만 접수·조사표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후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우선, 행정기관에 즉시 이물 발생 불만사항을 보고하고, 식품업체 자체적으로 이물 혼입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해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Q.10 연간총매출액에 따라서 보고기관이 식약청 또는 시·도로 구분됩니다. 연간총매출액 산정방법은?

- ▲ 식품업체가 1년간 생산한 모든 식품의 총매출액 합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사 생산 제품 뿐만아니라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제품의 매출액도 포함됩니다.
- ▶ 따라서 OEM 제품에서 이물 발견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 불만사항을 먼저 접수한 유통판매업소 또는 제조업소 누구나 식약청 등 행정기관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Q.11 이물 발견 신고 소비자와 불만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된 경우에도 행정기관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 ▲ 소비자의 오인 또는 부주의에 의하여 이물이 아닌 것을 소비자가 이물로 신고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나,
- ▲ 소비자가 신고한 내용이 이물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와의 피해보상 등 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 이물 혼입 원인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소비자 피해예방 등 동 지침의 목적을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물 발견 소비자 불만사항을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12 식품업체가 행정기관에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하고 증거 이물을 제출한 후 더 이상 조치할 사항이 없나요?

- ▲ 식품업체가 이물 발견 소비자 불만사항을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 (claim@kfda.go.kr, 02-380-1633, 1634)하고 증거 이물을 제출한 이후 에도, 식품업체는 자체적으로 이물 혼입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 또한 행정기관의 이물 혼입 원인조사 과정에서도 조사에 필요한 원재료 배합비율, 제조공정, 과거 유사 불만사례 등에 대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등 협조가 필요합니다.

Q.13 행정기관 보고 대상이 아닌 이물의 종류 및 이러한 이물 발견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식품업체의 조치 방법은?

- ▶ 머리카락, 탄화물, 참치껍질, 비닐 등의 이물은 보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이물 발견 소비자 불만사항이 접수된 경우,
- ▲ 식품업체는 동 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소비단계, 유통단계, 제조단계에 대한 원인조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개선 및 예방조치를 철저히 한후, 관련 자료를 2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Q.14 소비자가 제출한 이물에 대한 보관 및 폐기는 어떻게 하나요?

- ▲ 소비자가 제출한 이물이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이물의 범위에 포함 되면 이물을 훼손하지 않고 원래 상태 그대로 즉시 행정기관에 제공 하여야 하며,
- 행정기관에서는 이물 혼입 원인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가 완료된 경우 이물을 폐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물의 종류,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등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 식품업체가 행정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직접 자체 조사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조치하고, 그 관련 자료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Q.15 지침에서 정한 내용은 현재 법적 강제력이 있나요? 소비자의 이물 불만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식품업체는 어떠한 제재가 있나요?

-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소비자 불만사항을 즉시 보고하고 개선 및 예방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한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감면혜택이 있으므로, 보고하지 않은 식품 업체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 ▶ 따라서 식품업체에서는 이물발견 소비자 불만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청에서도 조속히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하여 보고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Q.16 식품중 이물 발견에 따른 행정처분?

- 이물이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 경우 행정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됩니다.
- ▶ 하지만, 회수진행중 또는 시정 및 예방조치가 진행중 발견된 동일 또는 동종 이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하지 않도록 지침 에서 정하고 있으며,
- ▶ 또한, 1차 처분 이후, 2차로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도 식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를 성실 하게 이행한 경우 가중처분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소비자 불만사항을 행정기관에 보고한 식품업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Q.17 회수진행중 또는 시정 및 예방조치가 진행중 발견된 이물에 대해 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기간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나요?
- ▶ 『위해식품 회수지침』에서 규정한 회수에 필요한 기간은 3개월이며, 이물 발견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기간도 약 3개월 입니다. 물론, 예방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 기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Q.18 식품 섭취시 이물이 발견되면 어디에 신고를 하나요?, 또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우리청 홈페이지 (www.kfda.go.kr)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시어 가까운 시·군·구 식품위생 담당부서 (위생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아울러,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제조물 책임법 또는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02-3460-3000) 또는 가까운 시·군·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19 소비자단체 등이 접수한 이물관련 소비자 불만사항도 식약청 또는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나요?

▶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동 지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물 발견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한 소비자단체 등도 행정기관에 즉시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